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32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3. 8. 14.
4. 회부일자 : 2023. 8. 21.

II. 제안이유

-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공립학교 소속 정원직종 교육공무원 채용 권한을 해제하고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효율적 인력 운용 도모.

III. 주요내용

1.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교육장 채용 권한 해제'(안 제5조제36호)
2. 학교장 채용 권한 대상을 '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 및 기간

제근로자'로 명확화(안 제6조제18호)

3. 학교장 경징계(감봉·견책) 권한 대상을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명확화(안 제6조제17호)
4. 학교장 중징계(정직·해고) 권한 대상을 '소속 학교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명확화(안 제6조제19호)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별첨 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 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3. 7. 19. ~ 7. 29.)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통보 확인서(별첨 3)

○ 학생인권영향평가 : 검토 의견서(별첨 4)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1232호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권한을 교육감으로 일원화하고 학교장의 채용 권한 대상과 징계 권한 대상을 명확화함으로써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¹⁾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등의 권한을 동 조례를 기초로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 중 교육감이 정원으로 관리하는 22개 직종의 채용, 정직, 해고 및 전보에 관한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동 조례 제5조제36호)되어 있으며, 공립학교 소속 정원 외 직종은 학교장에게 채용 등의 권한이 위임(동 조례 제6조제17호~제18호)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장 및 학교장이 채용하는 교육공무직

1)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원의 경우 직종에 따른 지역교육청별 응시율 편차가 매우 크고, 조리실무사 등 일부 직종의 경우 특정 지역의 응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 지역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 최근 3년간 교육공무직원 교육지원청별 신규채용 응시 경쟁률 현황

구분		전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전체	21년	1회	12.6	12.7	11.6	21.1	12.6	15.9	12.6	11.7	6.3	14.3	9.7	14.7
		2회	9.3	9.3	11.3	9.6	8.9	20.6	9.7	10.8	5.1	5.8	7.7	9.2
		3회	7.0	4.8	6.0	9.2	13.2	9.8	5.5	10.2	5.1	3.8	3.9	7.3
	22년	1회	6.4	6.7	8.5	7.3	11.6	3.3	5.5	8.3	2.8	5.3	8.6	7.5
		2회	10.5	14.6	11.7	7.8	15.0	17.0	11.9	12.8	4.2	8.5	11.2	12.3
	23년	1회	8.0	9.6	8.4	9.7	16.1	9.9	6.4	9.4	3.9	8.2	11.2	13.5
조리실무사	21년	1회	2.6	2.4	3.8	3.0	4.3	3.8	1.4	3.4	1.6	3.0	1.2	3.2
		2회	1.7	2.1	3.5	1.8	2.4	0.9	1.2	2.2	1.1	0.7	1.5	1.8
		3회	1.4	1.5	1.8	2.3	3.0	1.1	1.0	2.0	0.7	0.9	1.2	2.7
	22년	1회	1.0	1.3	1.2	1.1	3.2	1.1	0.5	1.4	0.5	0.9	1.2	2.8
		2회	1.0	2.1	1.4	1.1	1.9	0.9	0.6	1.3	0.5	1.1	1.1	1.4
	23년	1회	0.8	1.3	1.0	0.9	2.8	0.9	0.6	1.0	0.2	1.1	0.9	1.3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교육장 및 학교장이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을 교육감이 통합 채용함으로써 필요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는 것으로, 지역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 인력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현재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수가 19,860명(2023년 3월 1일 기준)에 이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120명 이상 채용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업무 과중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향후 5년간 교육공무직원 기관별 인력운용계획²⁾

(단위: 명)

구분 (기준일)	'22년 정원 (23.2.28.)	'23년 (23.3.1.)			'24년 (24.3.1.)			'25년 (25.3.1.)			'26년 (26.3.1.)			'27년 (27.3.1.)		
		정원	증	감	정원	증	감	정원	증	감	정원	증	감	정원	증	감
본청	84	84	0	0	118	34	0	138	20	0	138	0	0	138	0	0
직속기관	387	391	4	0	391	0	0	391	0	0	391	0	0	391	0	0
교육지원청	172	172	0	0	174	2	0	174	0	0	174	0	0	174	0	0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각급학교	16,259	15,939	218	538	15,870	84	153	15,869	98	99	15,889	101	81	15,887	42	44
합계	643	647	4	0	683	36	0	703	20	0	703	0	0	703	0	0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한 ‘교육공무직 중 공립학교 소속 정원 직종(특수운영 직군 제외)’에 대한 ‘채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는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한 ‘교육공무직 중 공립학교 소속 정원 직종에서 당직전담원 등 3개 특수운영 직군’에 대한 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18호 가항)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안 제6조는 그동안 ‘교육공무직 중 공립학교 소속 정원 직종(동 조례 제6조제18호)’과 ‘정원외 직종(동 조례 제6조제17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되어 있던 학교장의 징계 권한을 ‘경징계(감봉, 견책/안 제17호)’와 ‘중징계(정직, 해고/안 제19호)’로 구분하여 그 대상 직종을 명확히 정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이처럼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시킴으로써 교육감의 권한 위임과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의 발생 소지를 해

2) ‘2023년~2027년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서울시교육청(2023.5.)

소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채용권한 변경 내용

구분	조문	대상	권한		
			교육감	학교장	
채용	안 제5조 제36호	정원 직종 (공립학교 소속)	교육실무사[교무]	○ (前, '교육장')	
			교육실무사[과학실험]		
			교육실무사[전산]		
			교무행정지원사		
			유치원교육실무사		
			교육실무사[실습]		
			사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전문상담사					
구 학부모회직원					
사무행정실무사					
	안 제6조 제17호	정원 외 직종 (공립학교 소속)	정원 외 직종 무기계약직	○ (前, '학교장')	
	안 제6조 제18호	정원 직종 특수운영직군 (공립학교 소속)	당직전담원		○ (前, '교육장')
			미화원		
			시설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 (대상 명확화)
징계	경징계	안 제6조 제17호	교육공무직원 (공립학교 소속)		○ (대상 명확화)
		중징계	안 제6조 제19호	정원 외 직종 (공립학교 소속)	정원 외 직종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